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전재영

전화 041-660-4401/ 팩스 041-660-5021

보도자료
2022. 9. 7.(수)

제 목

환경사건 법리를 확립하여 폐수무단방류 사범을 엄단 [행정소송에도 지원하여 처분청 승소]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,

-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, ‘당진 부곡산업단지’ 전력구 굴착공사현장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자 수질오염방지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 및 공사 지연을 회피하기 위해 다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피고인들(A주식회사 및 소속 현장소장)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(8. 30., 각 벌금 1,000만 원)받음
- 검찰은, 직접 현장조사하여 무단배출시설 설치 및 이를 이용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, 기존 경찰수사에서 적용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의 오류를 발견한 후 관련 자료 전체를 재분석,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사실을 규명하였음
- 나아가 공판 과정에서, 관련 판결, 법률 제·개정 과정 및 신구법 비교 등 충실한 법리 연구를 통해, ‘폐수배출 방법 및 배출시설의 기준’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를 확립하고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,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환경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냄
-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당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(조업정지처분취소)에 검사의 법리검토서를 제공하여 처분청의 승소에 기여함으로써 공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
- 향후에도 검찰은 미래유산을 해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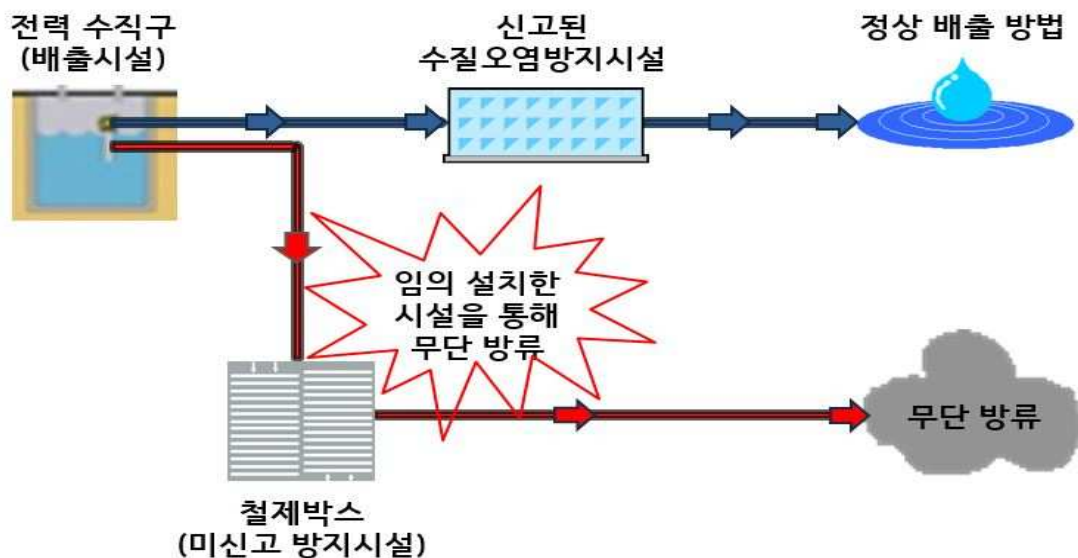
사건의 개요

○ 피고인

- A주식회사
- B○○(56세, A주식회사 현장소장)

○ 범죄사실 요지 및 죄명

- '18. 6.~'19. 2.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
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호스와 철제 박스를 설치,
② 부유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를 신고된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철제박스를 통해 방류 [물환경보전법위반]



○ 사건의 배경

- 피고인은 신고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폐수를 정화할 경우 용량의 한계로 작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, 다량의 지하수를 미신고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유출
- 이로 인해 당진 부곡산업단지 일대에 지반 침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

○ 관련 행정사건

- 당진시는, 피고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폐수무단방출을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고, 피고인 A주식회사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(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, 원고 : A주식회사, 피고 : 당진시장)

2

수사 및 재판의 경과

- '19. 7. 16. A주식회사, 당진시장 상대로 「조업정지처분취소소송」 제기
- '21. 8. 9. 검찰, 불구속 기소
 - A주식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, 당진시가 명확한 선례가 없음으로 인하여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, 검사 작성 법리검토서 등 수사결과 자료를 행정소송에 제출
- '21. 9. 15. 대전지법 제1행정부, 원고(A주식회사) 패소 판결 선고
- '22. 5. 13. 대전고법 제2행정부, 항소기각
- '22. 8. 30. 서산지원, 형사재판 유죄 선고(A, B 각 벌금 1,000만 원)

3

참고사항

- 피고인은,
 - ① 철제박스(침사조)는 비록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전법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고,
 - ② 이 사건은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되는 것인데, 철제박스(침사조)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맑은 물만 배출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였음
 - 검찰은,
 - 약 30년 동안의 관련 판결, 법률 제·개정 과정 및 신규법 비교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'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배출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'는
 - ①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금지되고,
 - ② '방지시설'은 허가 또는 신고된 방지시설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음
- ※ 달리 해석할 경우, ▲폐수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더라도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는 이상 처벌 불가, ▲관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정화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방지시설을 허용하는 폐해 발생

- 이후 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무단배출시설(철제박스)이 설치되었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한편,
 - 기록 검토를 통해 기존 측정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검사자료 전체를 제출받아 분석함으로써 실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된 사실 관계도 함께 규명하였음
- **형사(1심)·행정(1, 2심) 재판부가** 쟁점에 관한 명확한 판결례가 없어 **검사 작성 법리검토서의 결론, 논거, 논증구조, 인용규정 및 표현을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례로서, 검찰이 선례가 없는 환경사건의 법리를 확립하였음**

☞ **【적정 폐수배출 법리】**

“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수질오염물질을 허가 또는 신고된 방지시설을 통하여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하고, 무허가 또는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”

- 수질오염방지시설만을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한다면 방류용량, 농도 등이 모두 체크되는 등 관계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지반침하, 수질오염과 같은 방류수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,
 - 허가·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한 폐수방류를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무단폐수방출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

4 **의의 및 향후 계획**

-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,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수 중 일부를 신고되지 않은 무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방류함으로써 관계기관의 관리·감독을 회피함으로써 산업단지 등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힌 환경사범의 실체를 밝혀 엄단함
-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법리검토서 등 수사결과를 제공하여 처분청의 승소를 이끌어내고, 선례가 없는 환경사건의 법리를 확립하여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
- 앞으로도 미래유산인 환경을 해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 **엄정히 대응할 계획임** ☑